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4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3. 14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3. 1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3. 25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“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”에 따른 정원의 증원
-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업대책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의 승인으로 이를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정원의 증원(안 제2조)
 - . 정원의 증원(4명) 558명 → 562명
- 한시정원(안 부칙 제2항)
 - . 한시정원의 기한 : 2002. 12. 31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와 실업대책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초 생활 보장기능 보강인원의 증원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업대책기구 존속기한의 연장 필요에 따라 정원의 증원 및 한시정원이 승인됨으로서 정원과 한시정원에 대한 각각안을 조례에 명문화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2. 3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